

재일한국인의 인권문제에 관한 고찰

신혜봉(申惠奉)_아오야마가쿠인(青山學院)대학·국제인권법

목 차

- I. 머리말
- II. 전후보상문제
- III. 국민연금법의 국적조항과 경과조치-무연금 문제
- IV. 생활보호법의 '준용(準用)'에 대한 문제
- V. 입주차별 등의 문제-인종차별금지법의 필요성
- VI. 헤이트 스피치의 근절을 위하여-법 제정, 그리고 역사교육의 필요성

국문초록

재일 한국인의 인권문제는 일본 헌법학에서는 보통 외국인의 권리라는 주제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식민지에서 일본으로 끌려갔거나 살길을 찾아 건너와 정주하게 된 역사적 배경, 그리고 전후에는 일본국적을 일방적으로 박탈당한 사실을 생각하면, 재일한국인들을 단순히 “외국인”으로서 취급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 더구나 일본은 현재 수많은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적의 상관없이 관할하에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각 조약상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본고는 재일한국인의 인권 문제를 국제인권법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최근의 헤이트 스피치를 포함한 재일한국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은 근본적으로 일본에서 역사 교육이 부족한 데 원인이 있음을 강조하고, 국제인권조약은 인종차별의 철폐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에 관하여도 유익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주제어

국제인권법, 전후 보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사회 보장에 대한 권리, 인종차별, 헤이트 스피치

.....

I . 머리말

재일한국인의 인권은 헌법학의 인권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인권’ 범주에서 거론되지만, 재일한국인의 대다수는(즉 비교적 근래에 일본으로 이주한 뉴커머¹⁾는 제외) 일본의 과거 식민지출신자(식민지였던 국가에서 일본으로 건너와 일본국적을 가지게 되었던 사람)들과 그 자손들이라는 점에서 ‘외국인의 인권’이라고 하는 단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하고 깊이 있는 테마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 정부는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하, 강화조약)의 발효를 기점으로 과거 식민지출신자와 그 자녀들은 일본국적을 상실하였다고 규정하고 이들을 일제히 외국인등록법에 의한 관리하에 두었다.²⁾ 일본의 국적법은 혈통주의에 근거하므로 외국국적인 자는 일본에 오래 거주하였든,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2세 이후 세대이든 상관없이 일본국적으로 귀

1) 1980년대 이후에 일본으로 건너와 장기체재하고 있는 외국인을 지칭함. 특히 이들 중 한국인에 대해서는 제2차세계대전 전후에 일본국민으로 징용되거나 경제난민으로 일본에 오게 된 재일한국인·조선인과 구별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또한 한국계, 조선계뿐만 아니라 중국계와 일본계 브라질인 등 남미계 이민도 포함되는 의미이다.(역자 주)

2) 외국인등록법은 2012년에 폐지되었으며, 특별영주(永住)자에게는 특별영주자증 명서가 도입되었다.

화하지 않는 한 ‘외국인’인 채로 남았다.³⁾ 재일한국인의 인권문제 대부분은 재일한국인이 과거 식민지에서 이주 혹은 연행되어 와서 일본 외에는 생활 기반이 없기 때문에 영주하게 된 사람들과 그 자손들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외국인으로 처우되었다는 점에서 발단이 되었으며,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입각한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재일한국인의 인권문제는 전후보상문제, 일본에서의 재류자격문제, 해외 출국의 자유와 귀국의 권리, 공무취임권(公務就任權), 참정권,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이 법률적인 문제부터 시작하여 취업차별, 입주차별 등과 같은 사회적 차별까지 다방면에 걸친 문제이다. 법적으로는 1991년 입국관리특별법⁴⁾에 의한 특별영주자격부여와 같은 법률 시행을 통해 일부 문제에 대한 해결 시도가 있었다(단, 일반 영주자보다 한정적이라고는 하지만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해외 출국 후 다시 일본으로 귀국(재입국)하고자 할 때는 ‘재입국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점 등 기본적으로 외국인으로서의 취급은 변하지 않았다).⁵⁾ 또한 일본이 국제조약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평등의 의무를 지게 되면서 일본법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1979년 국제인권규약 비준 후에는 공영주택법, 주택금융공고법 등의 국적요건이, 1981년 난민조약 가입 후에는 국민연

3) 단, 여성차별철폐조약비준에 따른 1984년의 국적법개정으로 양계(兩系)혈통주의가 채택된 이후에는 재일한국인과 일본인의 혼인으로 태어난 아이는 일본 국내법에 따라 일본국적을 갖게 되므로 재일한국인의 인구는 국적 상 감소경향에 있다.

4) 일본과의 강화조약에 의거하여 일본 국적을 이탈(離脱)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별법.

5) 최근의 입국관리법(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정으로 2012년 7월 9일 이후에는 ‘간주(看做) 재입국제도 「みなし再入国制度」가 도입되어 특별영주자가 출국 후 2년 이내에 재입국할 의도를 표명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서 ‘입국한 적이 없는 2세 이후 세대들도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했던 불합리한 제도를 생각한다면 하나의 진전이라 하겠다.

금법과 아동수당관련³법 국적조항이 각각 철폐되었다.⁶⁾ 형벌에 의한 위협을 통해 지문날인을 강요하고 재일한국인에게 굴욕감을 주었던 외국인 등록법의 지문날인제도⁷⁾는 끈질기고 강력한 반대운동 결과 1999년에 전면 폐지되었다. 한편, 국민연금법 개정 시 경과조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무연금(無年金)⁸⁾으로 인해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 고령자 및 장애인들의 존재와 일본군 징용자들에 대한 전후 보상과 같이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문제들, 지방참정권과 같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⁹⁾ 입법화되지 못하고 좌절된 문제들도 있다.

국제인권규약비준에 의한 법개정이 재일한국인의 인권보장 향상에 도움이 된 것과 같이¹⁰⁾ 일본이 많은 인권조약 체결(締約) 국가가 된 지금, 이러한 테마는 국내법적 관점만으로는 논의할 수 없다. 인권조약¹¹⁾은 원

-
- 6) 국적요건의 철폐는 해석변경에 의한 것, 국적조항의 철폐는 법개정에 의한 것이다.
 - 7) 지문날인을 거부한 사람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못하는 제재가 가해졌다(崔善愛 사건).
 - 8) 70세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도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역자 주)
 - 9) 재일한국인인 원고가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 생활의 본거지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에 불복하여 제소한 사건(金正圭 소송)에서 최고재판소는 1995년 상고를 기각하였으나 법률로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자치체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 상 금지된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최고재판소 1995년 2월 28일 民集 49권2호, 639쪽)
 - 10) 재일한국인들이 폐지를 요구해 온 국민연금법의 국적조항이 난민조약가입에 의해 폐지된 것은 『黒船』이 된 인도시나 난민이라고 불릴 정도로 충격적인 것이었다(田中宏, 『在日外国人—法の壁, 心の壁(第3版)』, 岩波書店, 2013, 161쪽 이하).
 - 11) 인권조약이란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한 다수국가 간 조약을 말하며, 유엔에서는 국제인권규약 외에 인종차별철폐조약, 여성차별철폐조약 등 총 9개의 조약이 있다. 이들 조약은 조약의 국내실시상황에 대하여 조약기관(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공통 조항(국제적 실시제도)을 두고 있다. 또 한 난민조약은 난민의 권리보호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넓은 의미에서 인권조약에 포함될 수 있는 조약이지만 직접적인 목적은 난민수용에 대한 부담의 공평화이며 유엔난민고등변무관사무소(UNHCR)에 의한 감독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인권조약과 같은 국제적 실시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칙적으로 체결국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보장을 의무화하고 있으며¹²⁾ 국적 및 민족 출신의 차이가 인권을 제한할 수 없다. 오히려 인권조약은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으며 인종차별철폐조약과 같이 개인과 단체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입주차별과 같은 사회적 차별도 사실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 국내법의 불완전한 규제가 문제의 배경에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헤이트 스피치¹³⁾도 마찬가지이다. 이 조약상 일본은 당연히 헤이트 스피치를 법적으로 규제할 의무가 있다. 참고로 헤이트 스피치를 일삼고 있는 자들은 주로 재일한국인의 '특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이다. 이러한 희곡한 주장¹⁴⁾이 나오고 있는 배경에는 일본의 학교 교육에서 식민지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는 일본과 한반도의 현대사와 재일한국인의 존재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관련하여 거의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에 대한 무지, 몰이해(無理解)가 한국과 한국인, 그리고 재일한국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인종차별철폐조약은 인종차별로 이어지는 편견과 맞서기 위해 특히 교육과 문화 분야

12) 예외사항으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은 2조 3항에서 발전도상국은 외국인에게 경제적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3) 직역하면 '증오언론'. 본 장에서는 인종차별철폐조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종적 증오를 유포하거나 혹은 인종차별 및 그에 준하는 폭력행위를 선동하는 언론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14) 재특회(在特會)라는 단체는 재일한국인의 '특권'과 관련하여 특별영주자격과 생활보호 준용, 통칭(일본어) 사용을 예로 들고 있지만 그 어느 것도 특권이라고 할 만한 것이 못 된다. 본래 과거 식민지 출신자들 중 1세는 국적의 선택권을, 2세 이후의 세대는 신고에 의한 일본국적 취득권이 주어져야 하는 존재이다. 생활보호를 위한 자원은 세금이며 재일한국인은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모두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생활보호에 대해서는 본문 참조). 통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사회의 심각한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할 수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중에는 회사가 통칭사용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金稔万 씨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金稔万 씨는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오사카 고등재판소 2013년 11월 26일).

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점에서도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재일한국인의 인권에 대하여, 일본이 체결한 인권조약의 규범에 비추어 검토하고 일본이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지면 관계상 사회적으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만한 문제들을 우선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Ⅱ . 전후보상문제

전쟁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에는 전쟁으로 인한 부상자 및 전몰자와 그 유족·가족, 전지로부터의 귀환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총 13개의 법률이 있다. 이 외에 피폭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¹⁵⁾이 있지만, 이 중 피폭자지원 법률을 제외한 13개 법률에는 모두 국적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은급법(恩給法, 공무원연금법)’과 ‘전쟁부상자 및 전몰자 유족 등 지원법(戰傷病者戰沒者遺族等援護法, 이하 지원법)’에 대하여 살펴보자. 은급은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혹은 부상으로 인해 퇴직했을 경우에 지급되는 국가보상 성격을 띤 제도로 1923년 제정된 은급법에 의거하여 지급되고 있다. 공무원의 연금제도는 공제연금으로 이행되었기 때문에 현재 대상자 중 압도적 다수는 옛 군인들과 그 유족들이다.¹⁶⁾ 은급법은 국적을 상실할 경우 수급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5) 당초, 원자폭탄피폭자의 의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폭의료법) 및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이라는 2개의 법률이 있었으나 1994년 이후에는 원자폭탄피폭자 지원에 대한 법률(이하 피폭자지원법)로 일원화 되었다.

16) 總務省, 「恩給制度の概要」(http://www.soumu.go.jp/main_sosiki/onkyu_toukatsu/onkyu.htm).

(9조 3항). 지원법은 군인과 군속(軍屬, 군대에 있는 비군인)의 부상·사망과 관련하여 국가보상 정신에 의거¹⁷⁾하여 장애자에게는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및 조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952년에 제정된 법률이지만 군인에게는 은급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요 대상은 은급법에 해당되지 않는 군인 및 군속과 그 유족들이다. 한편 지원법은 부칙 2항에서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일한국인과 대만인을 배제하였다.¹⁸⁾ 전쟁 당시 식민지체제 하의 한반도와 대만에서 일본군인 및 군속으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끌려왔지만(이 중 5만여 명 전사), 이들과 그 유족들은 위의 두 법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법정투쟁을 통해 1980년대 후반에는 대만인 전몰자 유족들에게 조위금을 지급하는 법률이 제정되었고,¹⁹⁾ 2000년에는 과거 식민지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동일 법률²⁰⁾이 제정되었지만, 너무 늦어 제정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으며, 내용 또한 일본국적자들과 비교하면 매우 빈약했다.

군인을 대상으로 한 은급 지급에 대한 국적차별과 관련하여 자유권 규약에 의거한 개인통보 사안에서 평등권 침해가 인정된 바 있다. 이 규

17) '국가보상 정신'이란 지원법에 의거한 급부가 국가와의 신분관계에 의해 지급되는 것을 나타낸다(厚生省社会·援護局援護50年史編集委員会監修, 『援護50年史』, ぎょうせい, 1997, 195~196쪽).

18) 식민지체제에서는 한국인도 대만인도 일본의 '제국신민'이었으나 호적은 '본국(内地)' 호적과 구별되었으며, '본국'으로 호적을 바꾸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따라서 전후 참정권을 비롯하여 일본정부가 재일한국인 및 대만인들의 권리를 하나씩 정지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호적'을 기준으로 하는 구별이 실시되었다(田中宏, 2013, 63쪽).

19) 1987년의 '대만주민 전몰자의 유족 등에 대한 조위금에 관한 법률' 및 1988년의 '특정조위금 등의 지급 실시에 관한 법률'. 전몰자 유족 및 중증부상자에 대하여 1인당 200만 엔의 조위금을 지급.

20) '강화조약국적이탈자 등 전몰자 유족 등에 대한 조위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전몰자 등의 유족에게 1인당 260만 엔, 중증부상자에게 1인당 400만 엔의 조위금을 지급.

약은 26조에서 법률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²¹⁾ 프랑스령 세네갈 출신으로 프랑스군에서 병역 근무했던 게이에 등 퇴역군인들이 세네갈이 독립한 후 세네갈 국적이라는 이유로 프랑스인 퇴역병보다 낮은 금액이 지급된 것에 대하여 차별이라고 주장한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같은 임무를 수행(提供)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국적변경을 이유로 은급액에 차이를 두는 것은 26조에 위반되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²²⁾ 이와 같은 전례에 비추어본다면 일본의 은급법과 지원법에서 과거 식민지출신자들을 배제한 것은 일본이 비준하고 있는 자유권규약 26조에 위반된 것으로 지급액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제외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위법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Ⅲ. 국민연금법의 국적조항과 경과조치

— 무연금 문제

1959년에 제정된 국민연금법은 연금의 이념에 의거하여 피고용인(被用者)연금제도에 해당되지 않았던 농림어업자, 자영업자, 자유업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가입형²³⁾ 연금제도로, 노령·장애·생계유지자의 사망이 발생했을 경우 연금이 지급된다. 피보험자는 일본국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1981년 개정 전 법규에서는 일본국민을 지칭)이다.

21)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며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및 기타 의견, 국가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다른 지위 등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해서도 평등하며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22) Ibrahima Gueye et al. v. France, Communication No.196/1985, 1987년11월5일.

23) 단 학생은 1991년까지 임의 가입되었다.

난민조약가입과 함께 국적조항은 1981년에 삭제되었으나 35세 이상의 외국인은 60세까지 25년의 보험료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노령연금가입이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1982년 1월 1일 시점에서 20세 이상의 외국인 장애자는 장애연금가입이 인정되지 않았다. 1985년의 법개정을 통해 노령기초연금에 대한 요건이 완화되어 개정전의 국적조항 규정에 의해 피보험자가 되지 못하였던 기간이 지급 요건 기간에 가산되었지만 새로운 법률 시행 시에는 60세 이상인 자(1926년 4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자)는 또다시 제외되었다.

‘시오미(塩見)소송’ 판례의 원고였던 시오미 씨는 1934년 일본의 ‘제국 신민(帝國臣民)’으로 태어났지만 강화조약 발효와 함께 일본국적을 상실하였다. 그 후 1970년에 귀화하여 일본국적을 취득하였으나 1959년에 실명했을 당시에는 한국 국적이었다. 장애발생일이 법개정 이전이었기 때문에 개정 전 법률의 국적조항의 적용을 받아 장애복지연금의 지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한 소송으로 최고재판소는 1989년, 국적조항에 대한 입법부의 광범위 재량을 인정하여 소송을 기각하였다.²⁴⁾ 최고재판소는 특히 ‘무거출제(無抛出制, 국고에서 거출되는 방식)’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을 보장하는 책임은 일차적으로 당사자가 속한 국가가 져야 하므로 입법부는 경과조치를 마련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으로 시오미 씨와 같이 과거 식민지 출신으로 일본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본 이외에는 ‘속한 국가’를 상정할 수 없다는 점을 무시한 처사이다.

또한 사회권규약은 9조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모든 사람’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적 등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체약국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사회권규약은 체약국의 의무로서 “규약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실현하기 위

24) 최고재판소 1989년 3월 2일 판시 1363호 68쪽.

하여 ... 조치를 취한다”(2조 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보장을 즉각 완전하게 실현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규약상 계약국은 규약 상의 권리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행사될 것을 보장해야 한다(2조 2항). 사회권규약의 규정으로 해석하자면 국민연금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없는 단계에서 9조에서 연금수급권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지만 본건에서는 국민연금법의 국적조항이 문제가 된 것으로, 국적조항을 시오미 씨와 같은 과거 식민지 출신자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합리성을 사회권규약 9조와 2조 2항에 비추어 판단했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제시하고 있다(22조). 일본 스스로도 국민연금법에서 거주(居住)요건을 규정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회보장의 권리는 인간이 사회 일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적어도 일본에 거주하며 국민과 동일한 법적·사회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정주(定住)외국인에게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²⁵⁾ EU의 여러 국가들은 2003년 마련된 「장기거주자 제3국국민의 지위에 관한 지령」²⁶⁾에 의해 EU 이외 국가의 국민으로 합법적이며 계속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장기거주자 자격(적어도 5년간 유효하며 그 후에는 자동적으로 갱신 가능한 일종의 영주 허가)을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장기거주자는 각국의 국내법상의 사회보장제도에서 국민과 평등한 대우를 받을 것을 보장한다. 사회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장에 있어서 형식적인 국적의 유무가 아닌, 그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지속적인 정주성(定住性)을 만족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25) 大沼保昭, 『單一民族社会の神話を超えて』, 東信堂, 1993, 238-239쪽.

26) Council Directive 2003/109/EC of 25 November 2003 concerning the status of third-country nationals who are long-term residents, OJ L16/44(2004).

것이다. 과거 식민지 출신으로 일본에 영주하고 있는 재일한국인에 대해서는 굳이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IV. 생활보호법의 ‘준용(準用)²⁷⁾’에 대한 문제

1950년 제정한 생활보호법은 빈곤한 생활을 하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1조). 이는 일본정부가 생활보호는 헌법25조의 생존권에 따른 권리성을 갖는다는 취지하에 외국인을 제외할 의도로 규정한 것이었다.²⁸⁾ 한편 후생성은 1954년 통지²⁹⁾에서 외국인은 생활보호법의 대상이 아니지만 빈곤한 외국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에 준한 보호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도 개별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가 적용되었다.³⁰⁾ 그런데 이 후 1990년 10월 25일, 후생성은 내부회의에서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조치는 「입국관리법 별표 제2」에 기재된 영주자·정주자에 한한다고 하는 구두(口頭)지시를 내리고 그 이외의 외국인은 법의 준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³¹⁾

생활보호법이 이렇게 ‘준용’될 수 있는 영주자·정주자의 경우에도 실제로 큰 쟁점이 되는 것은 보호 개시를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가 라

27) 준용(準用):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사항에 적용하는 일.

28) 高藤昭, 『外国人と社会保障法－生存権の國際的保障法理の構築に向けて』, 明石書店, 2001, 102쪽.

29) 1954년 5월 8일 社發 382호.

30) 난민조약을 가입할 당시 생활보호법이 개정되지 않은 것도 동일 통지에 의해 모든 사항이 준용되었기 때문에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古賀昭典 編著, 『現代公的扶助法論(新版)』, 法律文化社, 1997, 124쪽).

31) 手塚和彰, 『外国人と法(第3版)』, 有斐閣, 2005, 324쪽.

는 점이다. 중국인 영주자의 생활보호신청이 각하되었고, 이에 대한 각하 취소 소송에서 후쿠오카(福岡)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2011년 일정 범위의 외국인은 생활보호법의 준용에 의한 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고 하는 주목해야 할 판단을 내렸다. “당초 생활보호법의 대상은 일본국민에 한정되었으나 실제로는 … 통지에 의해 외국인도 그 대상이 되어 일본국민과 거의 동등한 기준, 수속에 의해 운용되고 있었다… . 그 후 난민조약의 비준에 따라 … 생활보호법에 대해서는 상기 운용을 계속하는 것을 이유로 법 개정이 보류되는 한편, 생활보호 대상이 되는 외국인을 난민에 한정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되지 못한 점, 그 후 1990년 10월에는 … 대상이 되는 외국인을 영주적 외국인에 한정하는 것이 인정되었다. 그러자 국가는 난민조약의 비준 및 이에 따른 국회심의를 계기로 외국인 생활보호와 관련하여 일정 범위에서 국제법 및 국내공법 상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 바꿔 말하면 일정 범위의 외국인이 상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지위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었다는 것이다”.³²⁾ 그러나 상고심에서 최고재판소는 외국인은 행정조치에 의해 사실상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일 뿐 생활보호수급권(生活保護受給權)을 갖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³³⁾ 외국인에 관한 생활보호는 어디까지나 ‘준용’일 뿐으로 어떠한 권리성도 보장받지 못하는데도 일본 정부는 사회권규약위원회에 대한 정부보고서에서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내외국인평등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기재하는 등 대외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논리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하겠다.³⁴⁾

앞서 사회보장의 기반에 대하여 언급한 바와 같이 생활보호도 그 본

32) 후쿠오카 고등재판소(福岡高判), 2011年 11月 15日 判タ1377号 104쪽.

33) 최고재판소(最判) 2014年 7月 18日 LEX/DB25504546.

34) 田中宏, 「貧しきを憂えず, 等しからざるを憂うー生活保護大分訴訟, 高裁勝訴と上告審」, 『賃金と社会保障』 1561号(2012), 4쪽; 河野善一郎, 「永住外国人の生活保護申請却下処分取消訴訟」, 國際人權24号(2013年), 83쪽.

질은 사회연대원리에 입각하여 생활이 빈곤한 개인들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 장기간 거주하며 실질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정주 외국인에게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³⁵⁾ 역사적 경위에 의해 일본에 영주하고 있는 재일한국인이 그 권리를 가져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이치이다.

V. 입주차별 등의 문제 – 인종차별금지법의 필요성

일본사회에서는 입점거부, 입주거부, 골프클럽 입회거부 등 다양한 곳에서 외국인(뉴키머와 일본에 영주하고 있는 재일한국인 등 모두를 포함), 혹은 외국인 같은 외모를 가진 자들에 대한 인종차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재일한국인 2세나 그 다음 세대들과 같이 모국어로서 일본어를 사용하며 문화적으로도 일본인과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그 국적³⁶⁾과 이름 때문에 아파트나 맨션 입주를 거부당하는 일은 지금도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인종차별폐지조약에 있어서 ‘인종차별’이란 ‘인종, 피부색, 혈통, 민족 혹은 종족 출신에 따른 모든 구별, 배제, 제한 또는 우선을 말하며, 정치

35) 高佐智美, 「永住者の在留資格を有する外国人の生活保護申請」, 『國際人權』 22号(2011), 167쪽.

36) 재일한국인이 국적으로 인해 받는 차별에 대하여 ‘그러면 귀화하면 되지 않는가’라는 논조가 일본정부뿐만 아니라 일반사회, 때로는 이민문제연구자들로부터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귀화는 어디까지나 일본정부의 ‘허가’를 구하는 절차로, 일본에 영주하게 된 역사적 경위와 심각한 차별을 고려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1980년대 말경까지 행정지도로 실시되고 있던 일본식 성명으로의 개명강요 역시 식민지시대의 창씨개명을 상기시키는 행위로 이러한 거절 반응에 박차를 가한 계기가 되었다.

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 외 모든 공적 생활 분야에서 평등하게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인식하고 향유 혹은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조 1항). '공적 생활'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활동뿐만 아니라 기업활동 등도 포함하여 인간의 사회 일원으로서의 활동 전반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활동분야 중 특정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순수하게 사적인 활동을 제외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³⁷⁾ 평등에 관한 5조는 (e)에서 주거에 대한 권리와 교육에 대한 권리, 수송기관 및 호텔·음식점·극장·공원 등 일반대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장소 혹은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등과 관련하여 명문화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할 권리는 1조 1항에서 말하는 '공적 생활'에 포함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조약은 2조 1항 (d)에서 "모든 적절한 방법(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입법을 포함)을 통해 어떠한 개인, 집단 혹은 단체에 의한 인종차별도 금지하며 종료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조약가입 시, 이 2조 1항 (d)를 포함하여 조약상의 의무는 기존의 국내법으로 실시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국내법을 전혀 정비하지 않았다. 또한 6조는 구제(救濟)에 대한 규정으로, 조약체약국은 관할 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재판소(법원) 및 기타 국가기관을 통해 인종차별행위에 대한 효과적 보호·구제를 확보하고 차별로 입게 된 손해에 대한 배상 혹은 구제를 재판소에 청구할 권리를 확보한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개인에 의한 인종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법 아래에서의 평등에 관한 헌법 14조는 있으나 개인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러한 차별에 대하여 법적으로

37) 일본정부의 견해. 외무성 웹사이트 <http://www.mofa.go.jp/mofaj/gaiko/jinshu/top.html>.

로 싸우기 위해서는 민법의 불법행위규정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입점 차별 사안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해석에 인종차별철폐조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구제해준 판례가 있다. 미국출신 남성이 대중목욕탕 입장을 거부당하고, 일본에 귀화한 후에도 거부당한 사안으로 삿포로(札幌) 지방재판소는 2002년 점주의 행위는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명하였다.³⁸⁾

그러나 개인에 의한 인종차별에 대하여 현행법 해석으로 대처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입주거부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했던 재일한국인 변호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³⁹⁾ 불법행위소송에서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기 때문에 피해자는 우선 사실인정 단계에서 사실 입증의 벽에 직면하게 된다. 재일한국인에 대한 다른 입주차별 사안에서도 피고인 부동산업자와 집주인은 임차를 거부한 것은 원고가 고양이를 키우겠다고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만을 반복했다.⁴⁰⁾ 이와 같이 차별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는 방식 자체가 개인에 의한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효과적 구제를 확보해야 하는 조약상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사법적 구제는 개별사안의 사후구제(事後救濟)로 사회생활에서의 어떠한 행위가 위법한 인종차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일반적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위규

38) '본건 입점 거부는 국적에 의한 차별로 여겨지나 ... 실질적으로는 일본국적의 유무라고 하는 국적에 의한 구별이 아니라 외모가 외국인으로 보인다고 하는 인종, 피부색, 혈통, 민족적 혹은 종족적 출신에 의한 구별, 제한이라고 인정된다... 국제인권 B규약 26조, 인종차별철폐조약의 취지에 비추어 개개인에 대해서도 철폐되어야 하는 인종차별에 해당한다' 삿포로지방법판소(札幌地判) 2002年11月11日, 判時1806号, 84쪽.

39) 康由美, 「入居差別裁判をたたかって」, 『部落解放研究』 595号, 2008, 77-78쪽.

40) 尼崎入居差別訴訟を支える会, 『尼崎入居差別訴訟記録集』, 2007 참조.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판결은 고양이를 사육뿐만 아니라 한국국적이라는 점도 이유가 되어 임대를 거부하였다고 하는 불충분한 사실 인정에 입각한 판결이 되었다.(고베 재판소 神戸地判尼崎支部 2006年 1月 24日) 공소심 오사카고등재판소 大阪高判 2006年 10月 5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범이 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기도 하다.

인종차별철폐조약 2조 1항 (d)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입법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일본사회에서 입주차별 등의 차별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그에 대한 효과적인 사법적 구제가 확보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⁴¹⁾ 인종차별철폐조약 외에도 자유권규약은 26조에서 법률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과 국적 출신, 출생 등 어떠한 이유의 차별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의 보호를 보장할 것을 계약국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이 규정과 인종차별철폐조약의 2조 1항 (d)의 의무 및 인종차별 정의(동 조약 1조)에 따르면 국가는 고용, 주거, 교육, 사회적 서비스,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장소와 서비스 이용을 포함한 ‘공적 생활’분야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규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⁴²⁾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일본에 대하여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⁴³⁾

Ⅵ. 헤이트 스피치의 근절을 위하여 — 법 제정, 그리고 역사교육의 필요성

일본에서는 최근 ‘무뢰한 한국인 추방(不逞鮮人追放)’, ‘한국인 말살(朝鮮人は皆殺し)’과 같은 헤이트 스피치가 점점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말하는 재일한국인의 ‘특권’은 모두 근거 없이

41) 동일 취지, 村上正直, 『人種差別撤廃条約と日本』, 日本評論社, 2005, 229~231쪽.

42) 申惠丰, 『国際人権法—国際基準のダイナミズムと国内法との協調』, 信山社, 2013, 359~360쪽.

43) 최근에는 2014년의 총괄소견. UN Doc. CERD/C/JPN/CO/7-9, para.8

논의되고 있지만, 단순한 모략이라 하더라도 가두선전활동이나 메스컴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듣게 된다면 마치 실체가 있는 주장처럼 사회에 침투될 우려가 있다. 심지어 ‘○○인을 죽여라’고 하는 언동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는 사태는 실제 폭력행위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홀로코스트’나 ‘루완다 학살’을 예로 들 필요도 없이, 관동대지진(1923년) 당시 한국인들을 학살한 과거가 있는 일본은 모르는 척 그 위험성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⁴⁴⁾

인종차별철폐조약 4조는 인종적 증오·인종차별을 정당화하고 조장하는 선전·단체를 비난하고 인종차별의 선동 및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특히 (a)인종적 우월과 증오에 의거한 사상 유포, 인종차별 선동, 다른 인종집단에 대한 폭력행위 및 선동, 인종주의활동에 대한 원조 제공 등을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로 규정할 것, (b)인종차별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단체 및 선전활동을 금지하며 그러한 단체·활동에 대한 참가를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로 규정할 것, (c)국가 혹은 지방정부 당국 및 기관이 인종차별을 조장·선동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이 중 (a)와 (b)와 관련하여 헌법상의 집회·결사·표현의 자유 및 기타 권리 보장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의무를 이행한다고 하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 입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4조 중 (c)는 유보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전 도쿄도지사의 거듭된 인종차별 발언을 방치하고 있듯이 이 조항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2009년의 교토(京都)조선학교사건은 헤이트 스피치를 구체적으로 규

44) 관동대지진 당시 한국인학살을 되짚어보고 현재 만연하고 있는 헤이트 스피치에 경종을 울리는 최근의 역작으로 加藤直樹의 『九月，東京の路上で－1923年 関東大震災ジェノサイドの残響』(ころから, 2014)이 있다.

제한 법규정이 없는 가운데 현행법 대처의 가능성과 한계가 형사·민사 양면으로 드러나게 된 중요한 사건이다. ‘재특회(在特會)’ 멤버들은 당시 교토 조선제1초급학교(현재는 이전하였다) 문 앞에서 약 1시간에 걸쳐 아이들이 있는 학교를 향하여 메가폰으로 ‘이곳은 조선 스파이 양성기관’, ‘쓸모없는 조선학교를 일본에서 몰아내라’ 등의 구호를 외쳐댔다. 또 주변 공원(운동장이 없는 위 학교가 교토시와의 합의 하에 사용하고 있는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축구골대를 넘어뜨리고 조레대를 이동시켜 입구에 세워놓았으며 스피커 배선 코드를 절단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4명이 체포·기소되었지만 헤이트 스피치에 대하여 학교 측이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점에 대해서는 일본 검찰 측은 모욕죄로 간주하였다.⁴⁵⁾ 그러나 어느 쪽에 해당되든 보호대상은 개인적 법익으로 ‘조선인’과 같은 민족집단을 공격하는 언론을 처벌대상으로 한 규정이 형법에는 없다. 판결에서는 기물파손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징역형(집행유예)이 부과되었으나,⁴⁶⁾ 헤이트 스피치 자체에 대한 규제 면에서 일본의 형법에 결함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편, 학교법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교토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2013년, 본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은 인종차별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합계 약 1,200만 엔의 손해배상과 함께 가두선전활동 금지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⁴⁷⁾ 재판소는 인종차별철폐조약 2조 1항 (d)와 6조의 규정을 근거로, 조약체약국의 재판소로서 ‘동 조약의 규정에 적합하게

45) 전자는 사실적시의 요건에 대한 고려도 있었겠지만,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 혹은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에 비하여 모욕죄는 구속 혹은 과료로 매우 가벼운 처벌이다.

46) 京都地判 2011년4월21日 LEX/DB25502689. 피고인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1명은 공소하였으나 같은 해 10월 28일 오사카 고등재판소 판결에서 공소가 기각되었다.

47) 京都地判 2013년10월7日 判時 2208号74쪽 LEX/DB25501815. 재특회 측은 공소하였으나 2014년 7월 8일 오사카 고등재판소 판결에서 기각되었다.

법률을 해석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다. 또한 본 건의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죄는 이들의 행동이 재일한국인에 대한 차별의식을 선동할 의도를 가진 차별적 발언이며, 민족 출신에 따른 배제행위로 평등 입장에서 인권향유를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 조약 1조에서 말하는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도 동 조약 2조 1항과 6조에 의하여 ‘인종차별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및 구제조치가 되도록 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배상 금액 인정에 있어서도 조약에 적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획기적인 판결이라고는 하나 이러한 민사소송에도 한계가 있다. 본 건에서도 진정한 피해자는 아이들이었지만 상대방에게 아이들의 개인정보를 노출할 수 없어 학교법인을 원고로 세울 수 밖에 없었던 점과 아이들의 신상 안전을 염려하면서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재판이 이어나가야만 하는 불안한 상황 등이 지적되었다.⁴⁸⁾

다른 국가들의 경우, 인종차별철폐조약의 기준을 얻어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처벌을 형법에 포함시킨 국가들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인종차별주의와의 투쟁에 관한 1972년 7월 1일의 법률」⁴⁹⁾에서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하여 출신을 이유로 혹은 민족, 국가, 인종 혹은 특정 종교에 귀속된다는 것 혹은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차별, 증오 혹은 폭력을 선동하는 자는 1년의 금고 및 45,000유로의 벌금형 혹은 그 중 하나의 형벌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24조, 2004년 개정 후의 조문). 프랑스는 동 조약을 비준할 때 표현 및 결사의 자유와 4조의 의무이행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에 대하여 자국의 재량권을 남겨두는 취지의 선언을 첨부하였으나, 일본과 같이 유보한 채로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

48) 中村一成, 「ヘイト・スピーチとその被害」, 金尚均 編, 『ヘイト・スピーチの法的研究』, 法律文化社, 2014, 49-50쪽.

49) Loi n°72-546 du 1 juillet 1972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racisme.

지 않는 국가와는 차이가 있다. 캐나다는 동 조약비준에 따른 연방형법에 '헤이트·선동적 활동((propaganda)' 금지를 도입하고 318조에서는 '집단살해 선동'⁵⁰⁾에 대하여, 319조에서는 '공적인 증오 선동'⁵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헤이트 스피치 규제는 표현내용의 규제이기 때문에 남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헤이트 스피치 규제에 있어서는 단순히 언론규제라고 하기 보다는 인종차별을 없애고 사회적 약자(Minority)들이 평온하게 살수 있는 권리를 지켜준다는 관점이 중요하다. 인종차별철폐 위원회도 2013년 일반적 권고 35 「인종주의적 헤이트 스피치와 싸우다」에서 인종차별주의적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가 부정의(不正義)에 대한 항의, 사회적 반대 등의 표현을 억제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⁵²⁾ 2014년, 일본의 정부 보고 심사 후의 총괄소견에서는 '일반적 권고 35'를 언급하면서 '위원회는 인종주의적 언론을 감시하고 이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가 항의의 표명을 억제하는 구실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위원회는 당사국에 대하여 인종주의적 헤이트 스피치 및 헤이트크라임(범죄)으로부터 방어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를 받기 쉬운 입장에 있는 집단의 권리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할 것을 촉구하였다'고 밝히며 헤이트 스피치 규제

50) 1항 “집단살해를 선동하거나 촉진한 자는 소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으로 5년 이상의 금고형에 처한다.” 4항 “본 조항에서 특정 가능한 집단이란 피부색, 인종, 종족적 출신 혹은 성적 지향성에 의해 구별되는 대중적인 어떤 한 부분을 말한다.”

51) 1항 “그러한 선동이 평화 파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공공장소에서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특정 가능한 어떤 집단에 대한 증오를 선동한 자는 (a)소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으로 2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하거나 또는 (b)약식형(略式刑)에 처한다.” 2항 “사적인 회화를 제외하고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특정 가능한 어떤 집단에 대한 증오를 의도적으로 촉진한 자는 (a)소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으로 2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하거나 또는 (b)약식형(略式刑)에 처한다.”

52) CERD/C/GC/35, para.20

에 있어서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⁵³⁾ 또한 인종주의적 폭력과 증오 선동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과 마스크를 통한 헤이트 스피치를 퇴치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마련할 것, 인종차별로 이어지는 편견과 싸우고 다른 국적·인종·민족간의 이해·관용·우호를 촉진하기 위하여 헤이트 스피치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교육, 문화 및 정보에서의 정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⁵⁴⁾

이 총괄소견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헤이트 스피치의 근원에는 다른 인종·민족에 대한 불관용과 몰이해, 편견이 존재하며 재일한국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의 경우는 일본과 한반도를 둘러싼 현대사에 대한 극도의 무지함이 존재한다. 인종차별철폐조약은 제7조에서 인종차별로 이어지는 편견에 맞서고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히 교육과 문화, 정보 분야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실시할 것을 조약 체결국에 요구하고 있다. 헤이트 스피치의 적절한 법규제는 필요하지만 일본에서는 앞에서 지적한 인종차별금지법이 우선 필요하며 나아가 현대사를 배우고 한일관계와 재일한국인의 존재에 대하여 진지한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비롯한 교육현장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日本空間

번역: 김경림(전문번역인)

논문 투고일 : 2015년 4월 28일

논문 심사일 : 2015년 5월 19일

게재 확정일 : 2015년 6월 10일

53) CERD/C/JPN/CO/7-9, para.11.

54) Ibid.

참고문헌

- 加藤直樹, 『九月, 東京の路上でー1923年関東大震災ジェノサイドの残響』, ころから, 2014.
- 金敬得, 『新版 在日コリアンのアイデンティティと法的地位』, 明石書店, 2005.
- 金尚均 編, 『ヘイト・スピーチの法的研究』, 法律文化社, 2014.
- 申恵丰, 『国際人権法ー国際基準のダイナミズムと国内法との協調』, 信山社, 2013.
- 高佐智美, 「永住者の在留資格を有する外国人の生活保護申請」, 『国際人権』 22号(2011).
- 田中宏, 『在日外国人ー法の壁, 心の壁(第3版)』, 岩波書店, 2013.
- 中村一成, 「ヘイト・スピーチとその被害」, 金尚均 編, 『ヘイト・スピーチの法的研究』, 法律文化社, 2014.
- 村上正直, 『人種差別撤廃条約と日本』, 日本評論社, 2005.
- 総務省, 「恩給制度の概要」(http://www.soumu.go.jp/main_sosiki/onkyu_toukatsu/onkyu.htm).

Abstract

Human Rights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 Critical Analysis

Hae-Bong Shin

Issues concerning human rights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re usually dealt with in the framework of “human rights of aliens” in Japanese constitutional law. However, given the historical background that the Koreans from the ex-colony of Japan came to settle in this country, as well as the fact that they were unilaterally deprived of their Japanese nationality after the war, treating those Koreans and their descendants simply as “foreigners” raises grave concern in terms of their legal status. In addition, Japan is now a State party to a number of human rights treaties, by which it is obligated to ensure rights to all individuals within its jurisdiction regardless of nationality. This article critically analyzes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in ligh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t also emphasizes that discrimination against Koreans including hate speech has much to do with the lack of history education, and that human rights treaties provide useful insight on this point as well.

Key word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postwar reparation,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right to social security, racial discrimination, hate speech